

의안번호	2217785
의 퇴 인	복기왕의원
회 답 일	2026. 4. 7.
추계번호	26B1761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0조(재정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(제2호만 해당한다)·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(제5항) 1. 유류(油類)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.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제1항제2호, 「지방세법」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,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과금 <신 설> 2.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0조(재정 지원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 및 시행령¹⁾ 등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,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 등을 보조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,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연동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분됨²⁾

[표 1] 유류세연동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 개요

구분	유류세연동보조금	유가연동보조금
도입 취지	「에너지 세제 개편」으로 경유, LPG 세율이 인상(2001, 2005)됨에 따라 운수업계 경영부담 완화	운송사업자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도입

- 1) 법 제50조(재정 지원)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(油類)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·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제1항제2호, 「지방세법」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 2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,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과금
- 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·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
 2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·판매 부과금
 3. 「관세법」 제14조,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
 4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
- 시행령 제21조의4(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)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.
1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
 2. 일반택시운송사업자
 3. 개인택시운송사업자(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·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제3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유가보조금"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.
 - 가. 에너지 세제 개편(2001년)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(2016년)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또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조금
 - 나. 비상경제장관회의의 <2026. 3. 11.>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 및 천연가스(CNG)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

구분	유류세연동보조금	유가연동보조금
지급 내용 ¹⁾	[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 -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(경유 리터당 183.21원, LPG 리터당 23.39원)] × 주유량	경유 기준가격(1,700원/L) 초과 유류비의 70%를 지급한도(기준단가 183.21원/L) 이내에서 보조
지급 기간	2026년 12월 31일까지 * 당초 2001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한 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매년 연장됨	2026년 4월 30일까지 * 당초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매년 연장됨

주: 1) 현행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경유,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임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현행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5년 기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: 2025년

구분		지급대수 (대)	지급량 (만리터)	지급액(억원)		
				유류세연동보조금	유가연동보조금	계
택 시	경유	310	192	5	—	5
	LPG	184,652	149,936	2,497	—	2,497
	수소	70	4	3	—	3
	소계	185,032	150,132	2,505	0	2,505
버 스	경유	15,548	54,052	1,507	0.4	1,507.4
	LPG	39	25	0.4	—	0.4
	CNG	21,906	84,165	539	—	539
	수소	2,089	918	442	—	442
	소계	39,582	139,160	2,488.4	0.4	2,488.8

자료 : 국토교통부

- 개정안은 현행 유가보조금에 더하여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3)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4)의 발령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‘유류 구매비용’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※ [참고자료]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기준

-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급 기간, 지급 대상,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,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기간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란 전쟁 등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의 지속 기간 및 유가 상황이 유동적이며,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3)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3조(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4) 2026년 4월 2일 기준,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'주의'에서 '경계',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'관심'에서 '주의'로 격상함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자원안보위기 정보 발령 기준

(「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」 「별표 5」)

□ 석유

경보 단계	발령 기준
관심 (Blue)	·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<u>정세불안</u> * 원유감산 예고, 테러·폭동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수출제한 우려 ·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성 증가로 <u>운송차질 우려</u> · 국제 석유시장의 <u>변동성 증가</u> · <u>향후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</u>
주의 (Yellow)	·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<u>정세불안 증가</u> * 원유감산 실시, 생산·수송시설 파괴 등 부분적 생산차질·수출제한 발생 · 석유 수송경로 <u>불안정성 확산</u> · 국제 석유시장의 <u>변동성 확산</u> ·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<u>국내 원유도입 차질 전망</u>
경계 (Orange)	·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<u>정세불안 심화</u> * 원유감산 확대, 전쟁발발, 주요시설 파괴, 추가 수출제한 등 · 석유 수송경로 <u>일부 봉쇄 및 단기적 차질</u> · 국제 석유시장에서 <u>석유조달 일부 차질</u> · 호르무즈 봉쇄 등 <u>국내 원유도입 차질 발생</u> *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% 이상 감소
심각 (Red)	·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<u>정세 악화</u> * 원유생산 중단, 주변국 전쟁 확산, 생산·수송시설 파괴 심화, 전면적 수출 제한 등 · 석유 수송경로 <u>전면봉쇄 및 장기적 차질</u> · 국제 석유시장에서 <u>석유조달 전면 차질</u> ·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<u>심각한 국내 원유도입 차질 발생</u> *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50% 이상 감소

□ 천연가스

경보 단계	발령 기준
관심 (Blue)	· (도입·수송) 주요 생산국 정정불안, 지정학적 갈등 징후 등 <u>가스시장 불안 징후 포착</u> * 수송경로 불안정성 증가로 운송차질 우려
	· (생산·공급) 저장·생산·공급 시설에서의 <u>재난 발생 징후, 감염병 확산 등 포착</u>
	· (비축위기) 비축의무량의 80% 이상 100% 미만 보유
주의 (Yellow)	· (도입·수송) 주요 생산국 정정불안 및 지정학적 갈등 지속으로 인한 <u>가스시장 불안 지속</u> * 수송경로 지·정체 등 불안정성 확산
	· (생산·공급) 저장·생산·공급 시설에서의 재난 발생,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<u>수급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</u>
	· (비축위기) 비축의무량의 60% 이상 80% 미만 보유
경계 (Orange)	· (도입·수송) 주요 생산국 정정불안 및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인한 <u>일부 가스생산 차질</u> * 수송경로 일부 봉쇄 및 단기적 차질
	· (생산·공급) 저장·생산·공급 시설에서의 대형재난 발생,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<u>수급위기 발생 가능성 확대</u>
	· (비축위기) 비축의무량의 30% 이상 60% 미만 보유
심각 (Red)	· (도입·수송) 주요 생산국 정정불안, 지정학적 갈등 심화 지속 및 <u>대규모 생산시설·수송선 사고</u> * 수송경로 전면 봉쇄 및 장기적 차질
	· (생산·공급) 저장·생산·공급 시설에서의 대형재난 발생,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<u>수급위기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</u>
	· (비축위기) 비축의무량의 30% 미만 보유

- * 천연가스 재고수준과 수급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발령
- (재고수준) 향후 60일 이내에 천연가스 재고가 각 위기정보별 수준 이하로 7일 이상 지속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판단
 - (수급위기) 주요 생산국 정정불안, 지정학적 갈등, 가스시장 불안 등 도입 차질로 인한 공급 부족 및 국내 수요 급증 상황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판단

□ 핵심광물

경보 단계	발령 기준
관심 (Blue)	· 주요 생산국의 <u>정세불안</u> * 테러·폭동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수출제한 우려 · 저장·생산·공급 시설에서의 <u>재난 발생 징후 포착</u> 및 수송경로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<u>운송차질 우려</u> · 국제 핵심광물 시장의 <u>가격 변동성 증가</u>
주의 (Yellow)	· 주요 생산국의 <u>정세불안 증가</u> * 생산·수송시설 파괴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및 부분적 수출제한 실시 · 저장·생산·공급 시설에서의 <u>재난 발생</u> 및 수송경로 불안정성 확산으로 인한 <u>수급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</u> · 국제 핵심광물 시장의 <u>가격 변동성 급증</u>
경계 (Orange)	· 주요 생산국의 <u>정세불안 심화</u> * 전쟁발발, 주요시설 파괴, 추가 수출제한 등 · 저장·생산·공급 시설에서의 <u>대형재난 발생</u> 및 핵심광물 수송경로 <u>일부 봉쇄로 인한 단기적 차질</u> · 국제 핵심광물 시장의 <u>가격 변동성 급증 및 핵심광물 조달 일부 차질</u>
심각 (Red)	· 주요 생산국의 <u>정세 악화</u> * 주변국 전쟁 확산, 대규모 생산·수송시설 파괴, 전면적 수출 제한 등 · 저장·생산·공급 시설에서의 <u>대형재난 발생</u> 및 핵심광물 수송경로 <u>전면봉쇄로 인한 장기적 차질</u> · 국제 핵심광물 시장의 <u>가격 변동성 급증 및 핵심광물 조달 전면 차질</u>